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7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6. 2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297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7호, 2025. 2. 1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 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모넬라균을 검사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달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2항 및 별표1의2)
-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 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 삭제 등에 따른 축산물  
가공품 성상·이물검사 규정 정비(안 제5조제3항)

다.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품질  
검사 항목에 살모넬라균 추가(안 별표1의2 서식)

###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안전  
정책과, 전화 043-719-3250 팩스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식용란이”를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축산물로 한다.

1.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 가공·포장하는 축산물가공품·포장육
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수집하여 선별·세척·건조·살균  
·검란·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용란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

제4조제3항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2025년 7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항목 (제5조 관련)”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항목 (제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미생물	살모넬라균( <i>Salmonella</i> Enteritidis, <i>Salmonella</i> Typhimurium, <i>Salmonella</i> Thompson에 한한다.)
-----	--

##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 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u>식용란수집판매업</u>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 · 포장한 축산물가공품 · 포장육 및 판매하는 <u>식용란</u>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 략)</p> <p><u>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 · 가공 · 포장하는 축산물가공품 · 포장육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을 적용</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 ----- <u>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u> ----- ----- ----- <u>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u> ----- ----- -----.</p> <p>2. (현행과 같음)</p> <p><u>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축산물로 한다.</u></p> <p>1. <u>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u></p>

대상으로 한다.

업자가 제조·가공·포장하는  
축산물가공품·포장육

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수집하여 선별·세척·건  
조·살균·검란·포장하여 판매  
하는 식용란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  
란

제4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② (생 략)

③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  
별로 하여야 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  
수집판매업 -----  
-----  
-----.

제5조(자가품질검사 항목) ①·②

(생 략)

③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에 대한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에 따라 실시하  
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  
료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  
호나목(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품질검사 항목)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생 략)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 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  
-----  
---. -----  
-----  
--.

제11조(재검토기한) -----  
-----  
-----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